

보도시점 2023. 6. 30.(금) 09:00 배포 2023. 6. 30.(금) 08:30

특허청, 찾아가는 지재권분쟁 통합(원스톱) 현장자문 추진

- 전문가가 지재권분쟁에 불편을 겪는 기업을 방문해 맞춤형 자문 제공(6.30~) -
- 국내외 지재권분쟁 대응지원 사업 및 수사·행정조사 등으로 신속 연계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6월 30일(금)부터 해외 및 국내 지재권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재권분쟁 통합(원스톱) 현장자문’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재권분쟁 통합(원스톱) 현장자문은 변리사, 전문가 등이 지재권분쟁 불편을 겪는 기업을 직접 찾아가서 맞춤형 현장자문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들은 국내외에서 특허침해, 위조상품 피해, 상표 무단선점 등 지재권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지재권 전문인력 미비, 대응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 지재권 침해피해 기업은 분쟁 발생 시 불편사항으로 지재권 전문인력 부족(37.5%), 대응 방법·절차 등 정보 부족(27.8%)이라고 응답(특허청,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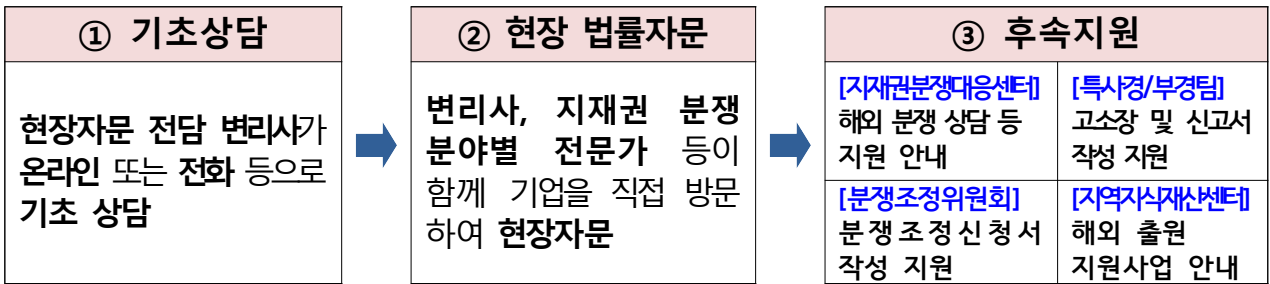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변리사, 지재권전문가 등이 기업에 찾아가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는 지재권분쟁 통합(원스톱) 현장자문이 추진된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재권전문가가 부족한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효과적인 지재권분쟁 대응전략을 안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이 지재권분쟁 통합(원스톱) 현장자문을 신청하면, 전담 변리사가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또는 전화로 기초상담을 진행한다.

기초상담을 통해 파악한 기업 현황 및 지재권분쟁 유형 등에 따라, 한국 지식재산보호원의 공익변리사, 지재권분쟁 분야별 전문가 등이 함께 기업에 방문해 맞춤형 법률자문을 제공한다.

후속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재권분쟁 유형별 대응전략 상담, 수사·행정조사, 분쟁조정 등을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다.

< 지재권분쟁 통합(원스톱) 현장자문 지원절차(안) >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지재권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지재권분쟁 통합(원스톱) 현장자문을 통해 지재권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재권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재권분쟁 통합(원스톱) 현장자문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6월 30일(금)부터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누리집(<https://pcc.or.kr>)을 통해 수시 신청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02-6006-4300)로도 문의가 가능하다.

※ 붙임1: 지재권분쟁 원스톱 현장자문 서비스 신청 화면

붙임2: 지재권분쟁 원스톱 현장자문 사업 개요

| | | | | |
|-------|------------------------|-----|-----|--------------------|
| 담당 부서 |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분쟁대응과 | 책임자 | 과 장 | 한덕원 (042-481-5182) |
| | | 담당자 | 사무관 | 문해진 (042-481-3573) |





상담신청

온라인 상담

산업재산권 관련 심판, 심결 취소 소송 대리지원 문의

방문 상담

온라인으로 방문 상담 예약 신청

온라인 사업 신청



서류작성 지원신청



심판·심결 취소소송대리지원



집해사건 민사소송 비용지원



지재권 분쟁경영 컨설팅



지재권 분쟁 원스톱 현장 자문

□ **현황 및 필요성**

- 중소·벤처기업은 지재권 전담인력 및 정보 부족 등으로 신속하고 적극적인 분쟁대응에 어려움 발생

* 지재권 침해피해 기업은 분쟁 발생 시 애로사항으로 지재권 전문인력(37.5%), 대응 방법·절차 등 정보부족(27.8%)이라고 응답(특허청, '22)

- 지식재산보호원 내 지재권분쟁 신고·상담센터*가 지재권 종류에 따라 분리되어 있고, 非 수도권 소재 기업의 상담 접근성 취약

* (산재권·영업비밀·부정경쟁행위) 지식재산 침해신고·상담센터,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 (영업비밀) 영업비밀보호센터 / (해외 산재권·부정경쟁행위) 지재권분쟁대응센터 등

□ **추진 방안**

보호원의 **공익변리사** 등 지재권 분쟁 전문가가 **국내 및 해외 지재권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원스톱으로 초동 현장자문 지원**

- (신청접수)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누리집을 통해 접수

* 신청서 제출순으로 접수 및 처리하고, 분쟁상황에 따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우선지원

- (현장자문) 공익변리사가 지재권 분쟁 유형에 따라 필요한 경우 단독으로 또는 他 지원사업 담당자* 등과 공동으로 초동 현장자문 제공

* 보호원 내 특허·K-브랜드·영업비밀 보호사업 담당부서에 현장지원 담당관 지정

- (후속지원) 사업지원이 필요한 경우 보호원 내 담당부서로 이관하고, 수사·행정 조사·조정은 접수서류 작성 지원 등을 통해 **특시경·부경팀·분쟁조정위원회**에 연계

< 지재권분쟁 원스톱 현장자문 지원절차(안) >

